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문화예술용역계약 체결 시점 명시 등 >

■ 조정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898호)

2025. 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문화예술 용역계약 체결 시점 명시(안 제4조의4)	3
2. 문화예술용역 계약 관련 사항 위반 시 재정지원 중단·배제 등 (안 제4조의5 신설, 안 제18조제1항제1호의2)	7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조정훈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2. 4.

다. 회 부 일 : 2025. 2. 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케이팝(K-POP)을 비롯하여 대한민국의 대중문화예술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화려한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여전히 예술작품을 함께 만드는 프리랜서 예술인에게는 기본적인 계약서 작성 및 체결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은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이행하도록 하고,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아니한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이미 현행법상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서면계약을 하지 않고 문화예술용역을 의뢰하거나 용역 이행 후에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의뢰 당시 약속한 계약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의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문화예술용역 계약과 관련한 제재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계약 체결

시점을 보다 명확히 법에 명시하고, 문화예술용역 계약 관련 사항 위반 시 재정지원 중단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문화예술용역 계약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 제4조의5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문화예술 용역계약 체결 시점 명시(안 제4조의4)

가. 개정안 요지

- 문화예술용역 계약 당사자는 문화예술용역 수행을 시작하기 전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안 제4조의4제1항).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의4(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①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u>대등한</u>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4(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① ----- ----- <u>문화예술용역 수행을 시작하기 전 대등한</u> -----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u>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항</u> 각 호에 따른 계약서 명시사항의 기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의 교부,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④ ----- ----- <u>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서면 계약의 체결 및 제2항</u> ----- ----- -----

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
--------------------	-----------------

다. 검토사항

○ 현행법 제4조의41)에 따르면,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고, 제5조의22)에 따라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은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

○ 그러나 문화예술용역 계약은 용역 수행 이전에 계약 금액, 계약 기간 등을 명시하여 서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서면계약을 하지 않거나 용역 이행 후에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용역 의뢰 당시 약속한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
- 1)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①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1. 계약 금액
 2. 계약 기간·갱신·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업무·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5.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6.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 ③ 제5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계약서 명시사항의 기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의 교부,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2) 「예술인 복지법」 제5조의2(계약서의 보존)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은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등의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³⁾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있어 용역 수행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계약 체결 시점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용역을 수행한 이후 계약 조건이 불합리하게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여 문화예술용역과 관련한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근절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계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안 제4조의4제1항과 연계하여 계약서의 교부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제4조의4제2항에도, 계약서 교부 시점을 “문화예술용역 수행을 시작하기 전”으로 명시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3)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예술활동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54.8%로, 서면 계약 경험이 48.7%, 구두 계약의 6.1%이며, 지난 1년간 체결한 계약 중 계약기간이 긴 순서대로 최대 3건까지 계약유형에 대해 상세히 응답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서면 계약 비중은 76.3%, 구두 계약 비중은 23.7%임.

2. 문화예술용역 계약 관련 사항 위반 시 재정지원 중단·배제 등 (안 제4조의5 신설, 안 제18조제1항제1호의2)

가. 개정안 요지

- 문화예술용역계약 관련 사항을 위반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을 중단·배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5 신설)
 - 고의 또는 중과실로 문화예술용역 수행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예술인에게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서 명시사항의 기재 및 계약서 교부 등에 관한 문체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예술인에게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8조제1항제1호의2)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4조의5(재정지원의 중단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하는 자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1. 제4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문화예술용역 수행을 시작하기 전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4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예술인에게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3. 제4조의4제4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중단·배제의 기간, 정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과태료) ① -----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4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u>아니한</u> 문화예술기획업자등	1의2. ----- ----- ----- <u>아니하거나</u> <u>예술인에게</u> <u>계약서를</u> <u>교부하</u> <u>지 아니한</u> -----
1의3. ~ 4. (생략)	1의3. ~ 4.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현행법 제4조의4제4항4)에 따르면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 작성 의무를 위반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제18조5)에 따라 문화예술 관련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않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문화예술기획업자등 및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 4)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1. 계약 금액
 2. 계약 기간·갱신·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업무·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5.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6.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계약서 명시사항의 기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의 교부,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5) 「예술인 복지법」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의2. 제4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아니한 문화예술기획업자등
 - 1의3. 제4조의4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 1의4.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과할 수 있음.

○ 개정안은 문화예술용역 계약 관련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중단·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계약서 미교부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문화예술용역 계약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문화예술용역 계약 관련 사항 위반 신고 건수 중 서면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가 가장 많아, 제재 강화를 통해 문화예술용역과 관련한 공정한 서면 계약 작성·교부 및 보존 관행을 정착시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최근 5년간 문화예술용역 계약 관련 사항 위반 신고·상담 현황]

(단위: 건)

유형 연도	서면계약서 내용 미비	서면계약서 미교부	서면계약서 미작성	서면계약서 미보존	서면계약 상담	합계
2020	3	1	19	-	214	237
2021	3	1	26	-	576	606
2022	2	2	14	1	557	576
2023	6	4	39	1	687	737
2024	4	2	31	1	741	779
계	18	10	129	3	2,775	2,93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개정안 중 예술인에게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안 제 18조제1항제1호의2는 예술계이 불공정한 계약 관행 방지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어 보이며, 문화체육관광부도 수용 의견임.

○ 다만, 개정안 제4조의5제1항의 재정지원 중단·배제 조항 신설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제1항의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문체부장관의 시정명령 및 제35조에 따른 재정지원 중단·배제가 가능하므로6), 법률 간 체계를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아

6)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예술인권리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제7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

나. 제8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

다. 제9조를 위반한 행위

라.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

마. 제14조제4항을 위반한 행위

제13조(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는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 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2. 예술인에게 적절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

4.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5.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제34조(시정명령) ① 위원회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검토한 결과 제2조제10호라목에 해당하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가 있었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행위를 한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해당 행위로

래와 같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법제처의 의견을 감안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 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는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서 금지하고 있고 그에 대한 시정명령 및 재정지원 중단·배제 근거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계약서의 미교부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배제 근거도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마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법제처는 재정지원 중단·배제 사유의 범위와 「예술인권리보장법」과의 적용 관계를 고려하여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중단·배제 사유의 범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 대해서 상당한 불이익을 주는 재정지원 중단·배제는 그 사유를 가능한 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정한 기간 내에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예술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하도록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①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술사업자 또는 사람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4조제5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하도록 통보한 자
2. 제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성폭력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하도록 통보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중단·배제의 기간, 정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우를 별도의 구분 없이 일괄해서 재정지원의 중단·배제 사유로 규정하는 안 제4조의5가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 (「예술인권리보장법」과의 적용 관계) 개정안의 문화예술 용역계약 위반 행위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의 불공정행위에도 해당될 수 있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하여 「예술인권리보장법」을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6조⁷⁾에 따라 「예술인권리보장법」의 관련 규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84

7)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